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 연구비 규정

제정: 2016. 4. 19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에서 우수한 한국 소화기학 학술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 연구비 (Korean Gastroenterology Fund for Future Development) 라고 한다.

제 3 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1명으로 연구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제 4 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소화기학에 종사한 의사로서 소화기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지원 대상의 추천)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추천 구비 서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4. 사진(명함판) 2매
5. 연구업적, 계획서 및 기타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논문 등의 목록 2부 및 3개 대표논문 사본 2부)

제 7 조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1. 심사위원회: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겸임하며, 심사위원장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절차: 기금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신청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제 8 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아래 심사표와 같이한다.

한국소화기학 미래발전기금 연구비 심사표

구 분	점 수
1. 창의성 (15점) 연구주제 및 계획에 독창성이 있는가?	
2. 연구 목적에 부합된 내용 여부 (10점) 제시한 연구제목에 적합한 내용인가?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15점) 목표 달성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4. 연구의 실현 가능성 (20점) 연구자의 능력, 연구환경, 연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학계 공헌 가능성 (20점) 연구결과가 학계에 어느 정도 공헌할 것인가?	
6. 최근 5년간 연구 수행 경력 (10점) 최상위 impact factor 논문 5개 평가	
7. 연구자의 관련분야 연구업적 (10점) 선행연구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가?	
총 점	
종합 평가 의견	

제 9 조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및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 (연구비 지급방법) 연구비 지급은 연구비 수혜자의 해당 병원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한다.

제 11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본 연구비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수혜자는 2년이내에 대한소화기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중간 보고한다.
2. 연구기간은 3년으로 기간 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SCI(E) 등재지에 게재하여 최종 보고한다.
3. 논문에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한다.
4.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기금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연구비는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여한다.